

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,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 지급금 회수처분 결정을 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.

2018. 5. 31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



1. 건 명 : 고용촉진장려금 기 지급금 회수결정 처분 알림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불임(공시송달자 명단 참조)
4. 공고기간 : 2018. 5. 31. ~ 2018. 6. 14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성남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지연(Tel 031-739-317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